제 2 판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2018. 2.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Ⅰ.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 **1**
1. 네거티브 규제의 유래 ····· 1
2.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 1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2
1) 유연한 입법방식 ····· 2
2) 혁신 제도 ····· 2

Ⅱ.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3**
1.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 ····· 3
2.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기대효과 ····· 3

Ⅲ.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 **4**
1. 유연한 입법방식 ····· 4
1) 포괄적 개념정의 ····· 4
2)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 6
3) 협의의 네거티브: 네거티브 리스트 ····· 9
4) 사후 평가.관리 ····· 10
2. 혁신제도 도입.활성화(규제 샌드박스) ····· 11
1) 규제 샌드박스 개념 ····· 11
2) 규제 샌드박스 핵심 요소 ····· 12
3) 규제 샌드박스 유형 및 사례 ····· 17

Ⅳ.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 ····· **19**
1. 적용대상 ····· 19
2. 전환절차 ····· 19
3. 사후관리방안 마련 ····· 20
1) 수용과제 ····· 20
2) 재검토 과제 ····· 20
3) 중장기 검토과제 ····· 20

Ⅴ. **네거티브 규제전환시 유의사항** ····· **21**
1. 네거티브 규제 도입목적 확인 ····· 21
2. 연관 규제 일괄 정비 ····· 21
3. 네거티브 전환 효과 검토 ····· 21
4. 사후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체계 구축 ····· 22

Ⅰ.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1. 네거티브 규제의 유래

○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

○ 무역규제 분야에서 통용되어 온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의 구분에서 유래

- 포지티브 리스트는 수출입 허용 품목만을 명시하고,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

- 네거티브 리스트는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만 명시하고, 명시된 품목 이외에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허용하는 방식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법률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개념

- 우리나라에서도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 중

2.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 협의의 개념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의미하며,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령 서술 방식으로 정의

-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만으로 정의하면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규제유형은 매우 제한적

○ 네거티브 규제의 장점은 금지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일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 확대

-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개념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외에 기존의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

1 유연한 입법방식

○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용성 극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재정립 필요

-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외에도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 및 서비스 분류 △사후 평가·관리 등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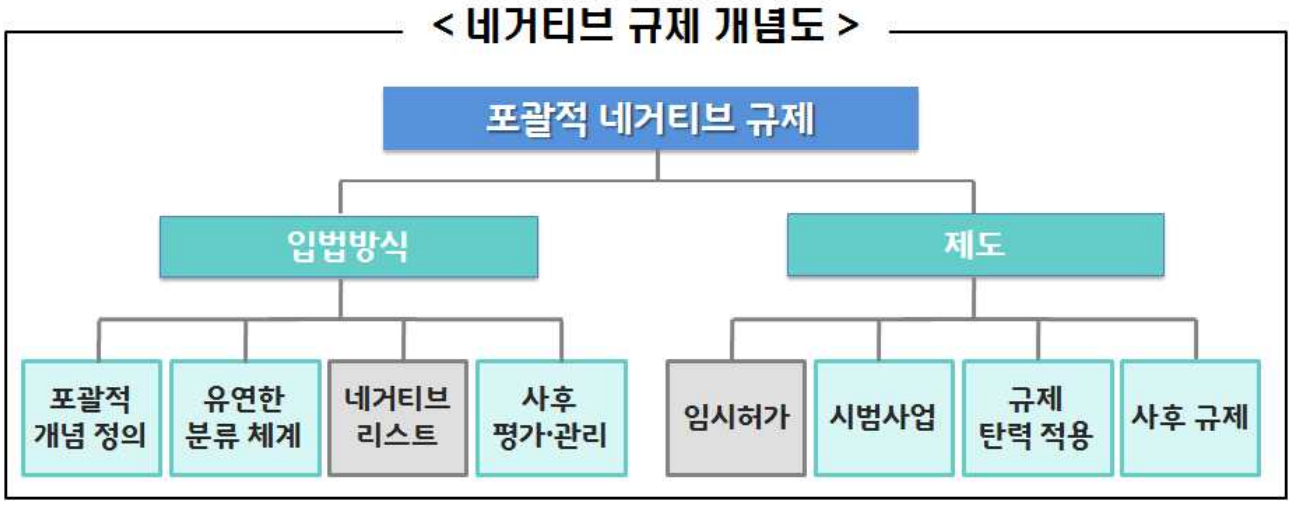
2 혁신 제도 (규제 샌드박스)

○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규제 입법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혁방식을 의미하나, 규제 입법방식의 변화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효과 달성이 어려움

-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의 등장속도와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

- 따라서 입법방식의 변화 외에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시도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제도 활용 필요

○ 혁신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혁신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임시허가 △시범사업 △규제 탄력 적용 △사후규제로 구성됨



Ⅱ.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

○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통해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사적영역·사적행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한해 규제 할 필요

*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과도한 사전 규제는 신상품과 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저해할 우려

- 또한 영·미의 불문법 전통과 달리 대륙법계 성문법 중심의 경직적인 우리 법령체계는 급변하는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신산업* 분야에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필요

*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 또는 첨단기술 기반 산업

2.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기대효과

○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국민의 자율과 창의 보장

▪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허용가능한 행위임을 알 수 있는 예측가능성 확대

▪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융·복합 현상 등에 유연하게 대응

▪ 급변하는 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허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 불요

Ⅲ.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 네거티브 규제 유형은 △**첫째** 입법방식의 변화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구현하는 유형과 △**둘째** 신산업·신기술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으로 구분

1. 유연한 입법방식

① 포괄적 개념 정의

○ 정의규정에 요건과 기준이 결합되어 있거나 기능과 종류를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어 신기술·신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

【유형 1】 기존 법령에 **요건**과 **기준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규정은 **개념의 범위 확장**

◈ 예 : **'선박급유업'의 개념 확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 (기존) 선박연료공급사업의 정의가 **석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으로 한정**

⇒ (개선) '선박급유업'에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

기존	개선안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 예 : **신소자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제5조)

▪ (기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개념을 광섬유(Optical Fiber)를 통해 운전자가 형상을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의

⇒ (개선) 다양한 소재의 표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발광형 표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기존	개선안
5. 제품의 정의 5.2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내부에 몇 개의 LED광원을 사용하여, 이를 **광섬유(Optical Fiber)를 통하여** 운전자가 형상을 보도록 하며, 문양을 구성하는 부분은 재귀반사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	5. 제품의 정의 5.2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내부에 몇 개의 LED광원을 사용하여, 이를 **발광체를 통하여** 운전자가 형상을 보도록 하며, 문양을 구성하는 부분은 재귀반사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

【유형 2】 개념 정의에 일부 품목을 나열하고 있는 규정은 관련 신산업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

◈ 예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 (기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7개 분야로 구분

* 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종합디자인 (3개 이상의 분야)

⇒ (개선) 열거규정 삭제

기존	개선안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사목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가. 시각디자인 분야** **나. 포장디자인 분야** **다. 제품디자인 분야** **라. 환경디자인 분야** **마.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바. 서비스디자인 분야** **사. 종합디자인분야**(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1. 해당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이하 삭제>**

2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 현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 제품·서비스 유형 분류는 기존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어렵게 함. **기존 분류체계 외에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분류체계 유연화 필요

【유형 1】 신기술 기반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신유형 카테고리 신설**

◈ 예 :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기존)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

* (구조)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크기)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개선) **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 유럽(EU)은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하여 새로운 형태의 차량도 신속 수용 가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 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동의획득 방법 유연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방식을 우편, 전자, 전자우편, 인터넷사이트로 한정적 열거

⇒ (개선) 새로운 통지방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	개선안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생략>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생략> 1.~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유형 2】 관련 협의체 및 관리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

◈ 예 :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기존) 이식이 가능한 장기·조직을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적 열거**

⇒ (개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용한 장기 등도 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도입

기존	개선안
제2조(장기등의 정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췌도(膵島) 2. 소장 3.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제2조(장기등의 정의)** 1.~ 3. (현행과 같음) **4.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장기**

◈ 예 : **옥외광고물 분류 유연화**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존) 옥외광고물 종류를 구조물 형태, 부착방식에 따라 **16종으로 한정 열거**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단 등

⇒ (개선) 옥외광고정책심의회 등에서 인정한 옥외광고물은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도입

기존	개선안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16. 동일

기존	개선안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 16. 생략	**17. 옥외광고정책심의회 등에서 인정한 옥외광고물**

3 협의의 네거티브 : 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을 나열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 허용,** 금지대상의 유형은 특정한 행위・물품, 특정한 사업・활동영역 등 다양

◈ 예: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전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기존) 유전자 치료 연구의 대상질환 제한

* 유전질환, 암, AIDS 및 타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 (개선) 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토록 개선

기존	개선안
제47조(유전자치료) ①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제47조(유전자치료) ① 삭제**

◈ 예: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정책법 시행령 제2조)

▪ (기존) 대기오염물질 8종별 대표 측정방법을 각 1개씩 명시

* △ 오존(O3) - '자외선광도법' △ 아황산가스(SO2) - '자외선형광법'

⇒ (개선) 대기오염물질별 측정방법 삭제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환경기준 >

항 목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SO_2)	자외선 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CO)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NO_2)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미세먼지(PM_{10})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PM_{2.5}$)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오존(O_3)	자외선 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Pb)	원자흡광 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4 사후 평가·관리

○ 시장 출시전 사전심의·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의 자율성 및 신속한 시장 진입 저해. **사전심의·검사 방식에서 자율심의, 사후 평가로의 전환 필요**

◈ 예 :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로 전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은 제작·배급하려는 경우 공급 전에 영상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필요

⇒ (개선) 제작·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심의하고, 공급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사후규제체계 전환

기존	개선안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 예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로 전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2)

▪ (기존)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 지정요건에서 정한 '장비 및 기구 목록표'에 기재된 장비 및 기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 (개선) **사전에 규정된 설비기준(목록표)을 삭제**하고 사후에 보유 설비 적정성 평가 방식으로 개선

기존	개선안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가.~ 나. (생 략) 다. 시험·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구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중 일부를 시험·검사 항목으로 지정받는 기관은 해당 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만을 갖출 수 있다.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가.~ 나. (생 략) 다. 시험·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구는 지정을 신청한 시험·검사기관의 분야·품목 및 항목에 따라 **다음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이하 생략>

2. 혁신제도 도입·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1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 **(목적)**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이 제한된 시장 환경에서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신산업·신기술의 활성화 지원

○ **(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신서비스·제품")**대상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하 규제**를 **일부 면제, 유예**하여 **테스트** 허용

* **샌드박스(sandbox) 어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 안에서 놀이토록 하는 데서 유래

- 혁신 사업자가 **기존 규제 부담 없이, 한정된 소비자·지역** 대상 **테스트 가능**

○ **(기대효과)**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인증 기준 등 규제가 없어 **시장 출시가 막힌 혁신 신서비스·제품의 안정성 및 사업성 검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 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참고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관계

○ **(포괄적 네거티브)**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규제**하는 **사후 규제체계,** 핵심 요소는 △**입법방식***과 △**혁신제도****

* △포괄적 개념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원칙허용·예외금지) △사후평가・관리

** △시범사업·임시허가 △규제탄력적용 △사후규제 수단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요소,**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혁신제도**

2 규제 샌드박스 핵심 요소

○ 규제 샌드박스는 4가지 요소가 개별 적용 또는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효과 발휘

① **신서비스·제품**의 안정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사업(실증사업)** 실시 또는

② 관련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우선 시장출시를 위한 **임시허가**

③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규제 탄력적용**)

④ 시범사업 등의 진행사항 및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사후 규제**

(①시범사업 or ②임시허가 + ③규제 탄력적용 + ④사후규제)

① 시범사업(실증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

▪ **(개념)** 신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 등을 위해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실시**

▪ **(특례부여 결정 절차)** 시범사업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탄력적용 **절차 마련**

* (예) 사업자 신청 → 소관 행정기관의 장 → 관계행정기관장 의견 회신 → 민관합동위원회 심의 → 소관 행정기관의 장 부여

▪ **(특례 취소)**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거짓, 부정한 방법 △심사기준 미충족 △조건 미충족 △실증특례 등의 목적 달성 불가능할 경우 등 취소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후적 보호 장치도 필요**

▪ **(손해배상)** 시범사업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관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이 어려울 경우 별도 배상 방안 마련하는 등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

◈ 예시 : **시범사업(실증사업) 및 규제 특례 도입 법령 개정안**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 자료임

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서비스·제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 등을 위하여 00부 장관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 특례를 말한다.

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신서비스·제품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 등을 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00부 장관에게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 등이 불가능한 경우

② 00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을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신서비스·제품의 혁신성·이용자 편익, 손해배상 방안 및 시험·검증 필요성,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00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상이 되는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00부 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신서비스·제품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0부 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서비스·제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00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00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⑨ 00부 장관은 신서비스·제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의 취소) ① 00부 장관은 제0조 제0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0조 제0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0조 제0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서비스·제품을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시허가 및 규제 탄력 적용

- **(개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우선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 **(법령정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기간 동안 신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정비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정비된 법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시장 출시 가능

◈ 예시 : **임시허가 제도 도입 법령 개정안**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 자료임

0조. "임시허가"란 신서비스·제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 등을 일시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신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00부 장관에게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서비스·제품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00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을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신서비스・제품의 혁신성・이용자 편익, 손해배상 방안 및 안전성 검증 필요성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00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임시허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00부 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서비스・제품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0부 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심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조. (임시허가의 취소) ① 00부 장관은 제0조 제0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0조 제0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0조 제0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서비스・제품을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후규제

- **(시범사업)**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자는 규제특례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 결과 등을 제출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 검토, 특례 기간 중에라도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즉시 착수

- **(임시허가)** 관계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정비 착수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 **(개념)** 금융업 혁신을 위해 **기존 금융업자 및 미인가 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시범사업 허용**

- **(절차)** 영국금융당국(FCA)은 **사업자의 신청**을 심의하여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일정 소비자군 대상 시범테스트 수행 허용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규제면제·유예의 법적 권한 보유(Financial Service Act)

구분	영국 금융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기	'15.11월 ~ ('16년 : 69개사 신청 → 18개사 선정·추진, '17년 : 71개사 신청 → 24개사 선정·추진)
적용대상	**기존 금융회사** 및 **미인가 기업**
주요 수단	① 개별지도 ② 특례적용 ③ 비조치의견서 ④ 제한인가 ⑤ 지정대리인
소비자보호	①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群을 사전에 한정 ②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보상체계 사전마련
사후조치	금융당국의 사후평가 후 정식인가 및 서비스 출시 허용여부 결정

◈ 영국 규제샌드박스에 활용되는 주요 수단

① 개별지도 : 신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금융규제 적용기준 질의 시 개별 유권해석 제공
② 특례적용(waiver) : 특정 금융회사에 신규 금융서비스 관련 금융규제 적용 면제
③ 비조치의견서 : 신규 금융서비스가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 아님을 명시적으로 회신
④ 제한인가 : 전체 인가요건 중 테스트 시행에 필요한 요건만 충족 시 한시인가
⑤ 지정대리인 : 인가 취득기업이 테스트를 원하는 미인가 기업에 영업 대리권한 부여

3 규제 샌드박스 유형 및 사례

○ **근거법**과 **특례 적용방식**에 따라 ① **분야별 특별법**에 의한 방식과 ② **개별법**에 의한 방식 두가지로 구분

① **분야별 특별법**

▪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분야별 4대 입법**에 근거

▪ **사업자 신청**을 받아 **개별** or **일괄 심사**를 거쳐 규제 특례 부여

- △**임시허가** △**시범사업[실증사업] 및 규제특례 (실증목적 규제특례)**

▪ 이 경우 **유효기간·조건 부가, 피해보상방안 마련, 필요시 법령 정비**

◈ 예 :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허용**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 (기존) 고객정보와 관련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이용 허용

*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와 무관한 시스템

⇒ (개선)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범사업(안전성 테스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② **개별법**

▪ 항공안전법, 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 등 개별법을 통해 샌드박스 도입

▪ 개별법에서 △영업범위·기간, △규제특례 내용, △조건 등을 **직접 규정**(사례1)하거나 이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사례2)

◈ 사례1 : **드론 시범공역 성능테스트 허용** (항공안전법 개정, '17.11월)

▪ (기존)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고고도비행(150m이상) 원칙 금지

⇒ (개선) 7개 시범공역*에서 상기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로운 성능테스트 허용

* 강원 영월,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부산 영도, 대구 달성, 전북 전주

◈ 사례2 : **금융기관의 제3자 업무위탁 범위 탄력적용** (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 개정, '17.11월)

▪ (기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 위탁 불가

* 대출심사, 예금.보험 계약, 신탁인수 등은 인가받은 금융기관만 수행가능

⇒ (개선) 제3자(지정대리인)에 필요한 범위내 '본질적 금융 업무' 위탁(최대2년) 허용하여 테스트베드 수행

* 제3자 지정시 ①영업지역, ②서비스혁신성, ③소비자혜택, ④위탁외 대체방안, ⑤시범운영 준비상태 등을 심의하고, 위탁사와 수탁사의 연대배상책임 부여

기존	개정
(신 설)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① 금융기관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탁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여부 3.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4.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즉시 영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참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 검토

○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보 (규제 그레이존 해소)

◈ 예시 : **규제 신속확인 도입 법령 개정안**

0조. (규제 신속확인) ① 신서비스・제품를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자는 00부 장관에서 관련 법령상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00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00부 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00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Ⅳ.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절차

1.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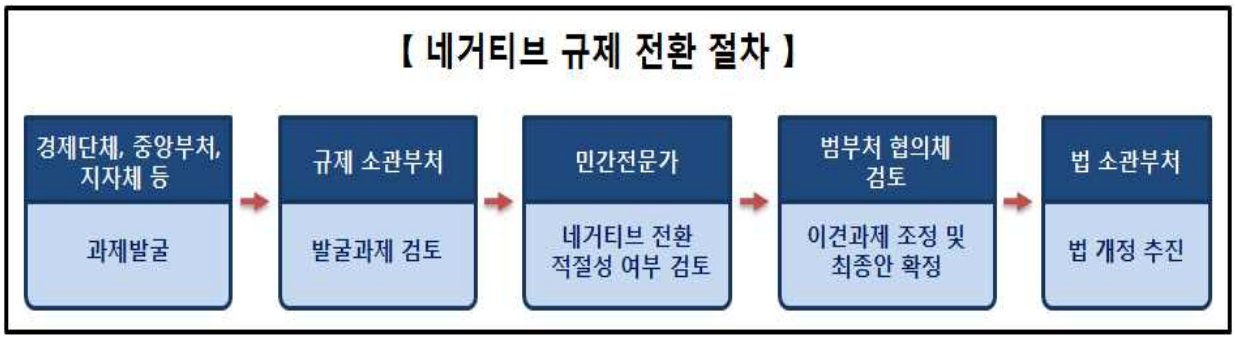
○ 원칙적으로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규제에 대해 전술한 △유연한 입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및 규제특례 근거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 다만 각 부처는 자체판단에 따라 신산업 가능 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발굴

○ 네거티브 규제전환 개선안은 1년 내에 최종안 도출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입법방식의 전환과 실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출

2. 전환절차

○ 경제단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 발굴 후 국조실 제출 → 소관부처 검토 → 민간 전문가 중심, 1차 검토 → 네거티브 규제개선 TF, 이견 과제 조정 및 검토, 최종안 확정 → 법안 개정 추진



○ 타부처 소관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 규제 소관부처가 검토하도록 조치

○ 발굴 과제 및 개선안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

○ 소관부처 검토 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해당 과제의 네거티브 규제 적절성 여부 1차 검토

○ 범부처 협의체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안에 대한 관련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전문가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조정 역할 수행

3. 사후관리방안 마련

1 수용과제

○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범부처 협의체 검토결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과제

- 각 부처는 수용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이행·점검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

2 재검토 과제

○ 재검토과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네거티브 규제 개선 TF 검토결과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과제

- 재검토 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부처에 통보

○ 소관 부처에서 재검토 과제에 대해 개선안을 수정·보완 제출하는 경우 전환절차 다시 진행 가능

3 중장기 검토과제

○ 중장기 검토과제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한 과제로, 입법방식의 전환과 실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과제

- 대표적인 사례로 △현장 확인·점검·지도 등 현장관리 인력 부족으로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과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존재하고 단시간에 이견 조율이 어려운 과제 등

○ 중장기 검토과제는 일반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선안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개선 TF에서 검토 후 중장기 과제로 관리

Ⅴ.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유의사항

◈ 네거티브 규제전환시 고려할 점은 △**첫째** 네거티브 전환을 위해 발굴한 규제의 내용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인지 확인 △**둘째** 해당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시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 기존 법령이 있는지 검토 △**셋째**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효과 및 부작용 없는지 점검 △**넷째**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1. 네거티브 규제 도입목적 확인

○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 인지 확인

○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부처의 소관 법령중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활용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임

2. 연관 규제 일괄 정비

○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실효성 제고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동시에 전환이 필요한 법령이 있는지 점검

* (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검토 필요

3. 네거티브 전환 효과 검토

○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예상되는 신시장 창출 및 신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경제적·사회적 효과 도출

○ 네거티브 규제전환 도입 시 국민의 생명·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지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첨예한 이해 상충 및 가치 충돌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 절차 마련 등 해결 방안 모색

4. 사후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체계 구축

○ 사전규제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방식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규제 당국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따라서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전 규제 방식에 의해 시장을 관리해 오던 관성을 제거하고 네거티브 방식에 맞는 사후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려 필요

○ 정부 주도의 시장 모니터링은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민간부문과 협업 고려

○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피규제자(기업과 국민)가 오용·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예컨대 피규제자의 자율성 오·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피규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